



(사)한국진공학회 서울기술연구원(사)플라즈마바이오산업진흥협회

업무협약서

서울기술연구원과 (사)플라즈마바이오산업진흥협회와 (사)한국진공학회(이하“각 기관”이라 함)는 바이오 4차산업 및 플라즈마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상호 협력과 각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이 바이오 4차산업 및 플라즈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각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즈마바이오 관련 연구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
2. 기술포럼 및 교육훈련을 위한 기술과 인적 자원 교류
3. 공동연구과제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협력과 지원 활성화
4. 온·오프라인 상호 홍보 지원

제3조(세부사업) 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며, 협력사업 세부내용은 별도의 추진협정을 체결하여 진행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제5조(협약의 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단위로 연장한다.



제6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일방 당사자가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 배제)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제4조를 제외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양 기관은 협약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 작성하고,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0월 6일



학회장 최 은 하

원장 고 인 석

상임부회장 김 도 영